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녹 색 건 축 물 조 성 지 원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학교 등 건축물도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토교통분야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확대(안 제9조제2항제4호 신설)

녹색건축 인증 의무화 대상 시설을 교육감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립 학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교육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1. 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교육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및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생 략)	제9조(개별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축 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하거나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u>4. 교육감</u>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연 락 처	(044) 201 - 3772